

수원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나108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노제민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347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0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05,800,000원, 부당이득반환채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위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 각 청구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100,000,000원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2015. 8. 20.자 도급계약서의 작성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 8. 20.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1) 2. 공사명: 화성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5. 8. 20.부터

완공 허가 후 완료일

5. 계약금액: 289,300,000원(= 공급가액 263,000,000원 + 부가가치세 26,300,000원)

6. 대금의 지급: 은행으로부터 도급사업자인 원고측에 직불 처리조건

가. 선급금: 계약체결시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나. 기성금: 공정률에 의거하여 매월 지급조건

다. 잔금: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증권 제출시 전액 지급조건

추가분 옹벽 부대토목 포함 금액

원사업자: 피고 C

도급사업자: 원고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합계 327,800,000원(= 계약서 기재 공급가액 289,300,000원 + 추가공사 38,5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2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나머지 공사대금 205,800,000원(= 공사대금 327,8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1) 피고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8.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45,000,000원을 변제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9.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31,473,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545,000,000원을 공제한 386,473,00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 즉 20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C이고, 따라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인 피고 C가 도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위 도급계약서의 의미는 피고 C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I이 피고 C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I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었고, 2015. 4. 10.자 법인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한 제1심 증인 N은 I의 지위와 관련하여, ‘피고 C는 위 양도·양수계약 이후 I에게 넘겼고, I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피고 C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I은 피고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의 소유명의자는 피고 C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화해 당시 작성된 화해조항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자가 피고 C임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2015. 6. 25. 시공사 T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6.부터 2016. 1. 15.까지 T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물기초공사, 철골공사, 판넬 및 창호공사, 화장실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대토목공사, 토목설계비, 건축설계감리 및 각종 보험료 등 항목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5. 6. 10.자 계약내역서가 피고 C 앞으로 작성된 점, 원고를 공급자, 피고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① 신축 철구조물 외 등에 관한 합계 176,000,000원(=

공급가액 160,000,000원 + 세액 16,000,000원)의 2015. 12. 21.자 전자세금계산서, ②

철구조물판넬 등에 관한 합계 113,300,000원(= 공급가액 103,000,000원 + 세액

10,300,000원)의 2015. 12. 31.자 전자세금계산서가 각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C는, 피고 C와 I 사이에서 I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I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J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J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를

모두 J 주식회사가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I 내지 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J 주식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C와 I은 2015. 4. 10.자 법인체 양도 · 양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I이 부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약정은 피고 C와 I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내부적인 공사비 부담에 관한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피고 C가 아닌 I이라고 볼 수 없다.

순번	일시	금액(원)	거래내용	상대계좌 예금주명	증거
1	2015. 4. 17.	20,000,000	I	I	갑6-4
2	2015. 9. 10.	20,000,000	(주)C	I	갑6-5
3	2015. 9. 23.	10,000,000	C	I	갑6-5
4	2015. 11. 26.	30,000,000	I	I	갑6-4
5	2015. 12. 7.	10,000,000	C	I	갑6-5

6	2016. 1. 11.	10,000,000	(주)C	(주)C	갑6-2
7	2016. 7. 15.	4,000,000	C	I	갑 6-2
8	2016. 8. 25.	10,000,000	J(주)	I	갑6-3
9	2016. 9. 28.	5,000,000	J(주)	I	갑 6-3
10	2017. 4. 28.	3,000,000	J(주)	I	갑 6-1
합계		122,000,000			

②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예금주명 및 거래내용에 I 내지 피고 C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부 거래내용에 J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I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거나 계약 체결 이후 송금된 내역 중 일부에 J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 I 내지 J 주식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I로부터 수급하여 착공하였으나 이후 피고 C가 사업자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I과 피고 C 사이의 2015. 4. 10.자 법인체 양도 · 양수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I과 피고 C 사이의 계약 체결 및 파기 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J 주식회사가 피고 C와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2) 공사대금채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89,300,000원에서 원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122,000,000원을 공제한 167,300,000원(= 289,300,000원 -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위 공사대금 이외에 38,5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C는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3,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다거나, 그 추가 공사의 범위가 38,5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C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말 이전에 완료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2015. 12. 31. 이전에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바 피고 C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은 2016. 1. 11. 금 1,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 11.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의 완공시기를 '허가 후 완료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허가일인 2016. 4. 29.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2. 18. 구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2015. 12. 14. 전기설비 사용전 점검확인증이 각 발급되고, 2016. 1. 28. 개인하수시설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점, ② 피고 C와 I 등 사이에 체결된 2016. 1. 7.자 합의약정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음을 전제로, I이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위해 투입한 금원을 정산하여 피고 C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이 사건 건물은 J 주식회사 등이 제조공장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N도 위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는 완료된 상태였고 이를 전제로 약정 내용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를 공급자, 피고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2015. 12.경에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5. 12.말경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착공 2015. 8. 20.부터’, ‘완공 2015년 허가 후 완료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의 완공시기를 원고의 주장 취지와 같이 그 용어의 기재내용과 달리 ‘사용승인완료’의 의미로서 ‘준공허가 후 완료일까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6항에 잔금은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증권제출시 전액 지급조건’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서 설령 공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완공시점을 ‘사용승인완료’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은 공사완료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5. 12. 31.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연경, 판사 정진화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의 표시 :

가. 경기도 화성시 ,

지목 : 대, 면적 : 1815㎡

나. 위 임야 980㎡다. 위 임야 2,899㎡2. 건물의 표시 : 위 지상경기도 화성시 , 동[도로명 : 경기도 화성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363㎡

1) 밑줄 친 부분은 수기로 작성되었고, 나머지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